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 정 : 2009. 2. 8.
- 일부개정 : 2009. 6. 3.
- 일부개정 : 2010.11. 2.
- 일부개정 : 2011. 9.15.
- 일부개정 : 2012. 4.12.
- 일부개정 : 2012.11. 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업무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폐지 심의
2.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의 개정
3.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개정
4.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5.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등록 및 사후관리
6.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및 인증취소
7.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
8.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의 홍보
9.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교육·연구·용역 등 부대사업
10.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인증수수료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지원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용어 정의)** 이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이란 재료 및 제품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고시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작성지침을 말한다. 작성지침은 일반제품에 대한 작성지침(이하 “작성

지침 1”이라 한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 2”라 한다)과 에너지사용제품별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 3”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이하 “인증지침”이라 한다)”이란 저탄소제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인증지침으로, 고시 제6조의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인증지침을 말한다. 인증지침은 동종제품군별 탄소배출량 및 탄소감축률을 포함한다.
3.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지침(이하 “체계 인증지침”이라 한다)”이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다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청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의 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인증지침으로, 고시 제6조의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체계 인증지침을 말한다.
4. “탄소배출량”이란 제품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값을 말한다.
5. “저탄소제품”이란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이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탄소감축률”이란 고시 제6조의1에 따라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말한다.
7. “제품군 검증체계”란 동일한 기능을 지닌 다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청인이 자사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갖추고 있는 내부 검증체계를 말한다.
8. “제품군”이란 주 기능이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 법인 또는 제조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부류를 말한다.
9. “인증심사단”이란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인증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인증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술원장이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10. “인증심의위원회”란 인증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인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장이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11. “인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란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인증 또는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인증 경비로서 고시 제9조 별표 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12. “동일인증”이란 최초 인증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물질의 성분과 비율 등이 동일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한 제품을 인증제품에 대한 동일제품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13. “파생제품”이란 최초 인증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디자인이나 형태는 동일하며 성분(재질)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을 말한다.

14. “변경인증”이란 인증기간 동안에 제품의 생산공정이나 성분(재질)비율 등의 일부가 변경되어 변경된 탄소배출량을 제출할 경우 해당 탄소배출량이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15. “갱신인증”이란 인증기간이 종료되어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또는 인증지침을 충족하는 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16. “기준제품”이란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저탄소제품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기준이 되는 제품으로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17. “탄소성적표지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이란 탄소성적표지제도 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정책적, 기술적 측면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기술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2장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제4조(작성지침 개정)**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성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1.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작성지침상의 보완 사항
  2. 관련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3. 기타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기술원장은 작성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3. 기술원장이 지명한 기술원 직원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작업반장은 작업반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한다.
- ④작업반장은 작업반 운영결과를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기술원장은 제4조에 따라 작업반으로부터 작업반 운영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검증위원회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전문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할 본부장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성지침 개정안의 적합성 여부 판단

2. 작성지침 개정안의 국제표준과의 부합성 여부 판단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검증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⑤검증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작성지침 적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 작성지침 검증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작성지침 검증의결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 ⑥기술원장은 검증위원회 개최결과가 적합한 경우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기술원장은 검증위원회 개최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이를 작업반에게 돌려보내고, 보완조치한 다음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적합 여부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한다.
- ⑨검증위원장은 검증위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에너지사용제품별 사용 시나리오 제정·개정)** ①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 대상제품 선정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의 존재 여부
  2. 에너지사용제품으로의 적합 여부
- ②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제품 선정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이미 제정된 사용 시나리오가 존재하거나 대상제품으로 부적합한 경우
  2.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 ③기술원장은 신청자로부터 대상제품 선정제안서를 접수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문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 해당제품의 생산 및 유통관련 전문가
  3.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할 본부장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선정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⑤선정위원장은 기술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⑥선정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대상제품 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선정위원장은 선정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 대상제품

선정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대상제품 선정의결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⑧선정 여부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한다.

⑨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할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원의 부서장 4인을 위원으로 하는 내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제품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측정방법이 널리 알려진 경우
2. 유사 인증제도를 통하여 인증사례가 있는 경우

⑩기술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작업반과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 시나리오를 제정하여야 한다.

⑪기술원장은 에너지사용제품별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1.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작성지침상의 보완 사항
2. 관련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3. 에너지사용제품별 사용 시나리오 제정·개정된 다음 3년이 경과한 경우
4. 기타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저탄소제품 인증지침 개정

**제7조(인증지침 개정 및 예비공고)** ①기술원장은 고시 제6조의1제2항에 따른 동종제품군별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률을 개정·공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전문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 기술원장이 지명한 기술원 직원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작업반은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동종제품군별 인증지침을 반기별로 1회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작업반장은 작업반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한다.

④작업반장은 작업반 운영결과를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작업반 운영결과를 탄소성적표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간 예비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공고)** ①기술원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예비공고한 인증지침에 대한 별지 제3호의5서식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예비공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지침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전문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관련 전문가
3.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할 본부장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종제품군 분류의 적절성
2. 동종제품군별 기준단위 설정의 적합성
3. 동종제품군별 탄소배출량 및 탄소감축률 값의 적합성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검증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⑤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 인증지침 적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검증위원회 개최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의4서식 인증지침 검증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4서식 인증지침 검증의결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⑥적합 여부는 참석위원 전원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한다.

⑦기술원장은 검증위원회 개최결과 인증지침이 적합한 경우 즉시 탄소성적표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기술원장은 검증위원회 개최결과 인증지침이 부적합한 경우 이를 작업반에게 돌려보내고 보완조치한 다음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기술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⑩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4장 탄소성적표지 인증준비

**제9조(접수)** ①기술원장은 탄소배출량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고시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비서류를 적합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다음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접수증을 발급한다.

1. 인증 대상제품으로의 적합 여부
2. 에너지사용제품의 경우에 사용 시나리오의 존재 여부
3. 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당해 제품의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 일체를 가진 자의 동일 여부

②기술원장은 저탄소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고시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비서류를 적합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다음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접수증을 발급한다.

1.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준제품이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명확한지 여부
- ③기술원장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비서류를 적합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다음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접수증을 발급한다.
  1. 인증 대상제품군의 적합여부
  2. 대상제품군이 에너지사용제품일 경우 사용 시나리오의 존재 여부
  3. 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당해 제품군의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 일체를 가진 자의 동일 여부
  - ④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돌려 보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품 등의 물품을 유통시키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자사상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제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대상제품 또는 대상제품군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3. 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당해 제품의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 일체를 가진 자가 다른 경우
  - ⑤기술원장은 접수된 제품 또는 제품군에 대하여 고시 제9조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된 청구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기술원장은 신청자로부터 수수료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인증심사를 진행한다.

**제10조(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인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탄소배출량 인증 대상제품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저탄소제품 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대상제품군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인증신청 제품 또는 제품군이 에너지사용제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인증신청 제품이 최초 인증제품에 대한 동일 또는 파생제품 해당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②사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전문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 대상제품의 생산·유통·소비관련 전문가
  3.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할 본부장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사전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④사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한다.  
⑤사전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사전심의)** ①기술원장은 인증신청 제품 또는 제품군이 인증심사 전에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6호서식 사전심의 의견서에 제시된 심의항목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적합 여부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참석인원
- ③사전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 사전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취합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전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 제5장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12조(인증심사단 구성 및 기능)** ①기술원장은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2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심사단에 별지 제7호서식 심사의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9조제3항의 경우에는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1인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심사원 1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심사단에 별지 제7호서식 심사의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심사단은 기술원장으로부터 심사의뢰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2. 현장심사계획서 작성 및 송부
3. 현장심사
4. 인증심의위원회에 심사결과 보고
5. 그 밖의 인증 관련 업무

**제13조(인증심사)** ①심사단은 기술원장으로부터 심사의뢰서와 구비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먼저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 서류심사보고서를 심사

원별로 작성한 다음 심사단장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사단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또는 제품군 탄소배출량 산정 및 내부검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부적합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심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일시 중단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증기관은 추가 심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 심사비 산정 기준에 따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심사단장은 해당기업이 2회 이상의 보완기간 동안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심사기간에 소요된 심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서류심사가 완료된 다음 심사단은 제품규격, 생산공정, 데이터 관리체계, 내부검증체계, 현장데이터,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 현장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단은 현장심사 일정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⑤심사단은 현장심사계획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한 별지 제10호서식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자 대표가 심사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심사단장과 신청자 대표가 종합심사보고서에 서명날인한 후에 1부씩을 보관한다.

⑥심사단장은 신청자가 종합심사보고서에 제시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뢰서를 작성하고 서류심사보고서와 종합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술원장은 심사단장으로부터 심의의뢰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기술원장은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제품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신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결과가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판정
2.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제품의 경우에는 인증지침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정
3.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체계 인증지침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정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판정

②심의위원회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전문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 대상제품의 생산·유통·소비관련 전문가

3.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할 본부장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심의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한다.

⑤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할 본부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 및 선임급 이상의 전문연구직 4인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내부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1. 개정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재산정하는 경우
2. 기 인증제품을 갱신하는 경우
3. 기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을 갱신하는 경우
4. 기타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증심의)** ①기술원장은 인증심사단의 심사가 완료된 다음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기술원장이 제출한 심의의뢰서를 토대로 위원별로 별지 제12호 서식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이를 취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 인증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의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인증심의의결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③심의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는 참석위원 전원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한다.

④심의위원장은 적합 판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승인 또는 승인보류 판정을 할 수 있다.

⑤신청자가 조건부승인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보완요청을 이행한 보고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에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⑥승인보류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심의위원의 보완요청을 이행한 다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은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적합 판정이 되면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인증지침을 충족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⑧심의위원장은 필요시 심사단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결과통보)** 기술원장은 인증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심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심의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동일인증)** ①기술원장은 신청자가 별지 제14호서식 동일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일인증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동일인증 신청제품이 최초 인증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물질의 성분과 비율 등이 동일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한 경우 인증제품에 대한 동일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기술원장은 동일인증에 대한 판정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동일제품-제조원 인정)** ①기술원장은 인증을 얻은 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기 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확보한 자가 당해 제품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얻고자 하는 경우, 기 인증제품(최초 및 파생제품에 한함)의 인증신청보고서를 활용하여 별지 제14호의2서식 동일제품제조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일제품-제조원 인정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품에 대한 책임 여부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동일제품-제조원 인정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파생제품 인증)** ① 기술원장은 신청자가 별지 제15호서식 파생제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생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파생제품 인증에 대한 판정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③파생제품 인증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변경인증)** ① 기술원장은 탄소배출량 인증제품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 변경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인증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인증기간 중 제품의 생산공정 또는 제품조성비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2. 원료수입선이나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이 일부 변경된 경우

②변경인증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③기술원장은 변경인증에 대한 판정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전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④변경인증 수수료는 파생제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수수료 중 제경비는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단순 오류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만 징수한다.

**제20조(갱신인증)** ①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기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갱신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종료일 150일 이전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갱신인증에 대한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③갱신인증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업무규정을 준용하며, 인증심사와 인증심의를 진행한 다음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기술원장은 최초 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갱신된 성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기술원장은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의 갱신인증을 할 때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반영하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탄소감축이 달성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갱신인증 수수료는 파생제품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등)** ①기술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에 대해 고시 별지 제3호서식 탄소배출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 탄소배출량 인증 관리대장과 별지 제20호서식 탄소배출량 인증서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②기술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에 대해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저탄소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 저탄소제품 인증 관리대장과 별지 제20호의2서식 저탄소제품인증서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③기술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체제 인증기업에 대해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의3서식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관리대장과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서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④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인증서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변경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3. 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의 변화없이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4.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

⑤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서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적합 여부에 따라 변경전 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재교부한다.

**제22조(인증기간)** ①인증이 결정된 제품 및 체계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기간은 인증승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동일제품과 동일제품·제조원 인정 제품 및 변경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제품의 인증기간을 따른다.

**제23조(탄소성적표지 표시)** ①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자는 탄소성적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기술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저탄소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탄소성적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 탄소성적표지(저탄소제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기술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인증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표시는 사업장별 탄소배출량에 대한 가중산술평균치를 제품에 표시하여야만 한다.

**제24조(지위승계)**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공장을 양도받은 자

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합병의 경우 합병한 다음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는 인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유서

2.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③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인증제품의 상표명, 인증제품의 물성 및 외형 등의 주요사항 및 제조공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5조(이의신청)** ①이해관계자 또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작성지침 및 인증지침

2. 인증결과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장 탄소성적표지 사후관리

**제26조(사후관리)**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증제품 및 체계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시 제시한 물질조성 및 생산공정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2. 탄소배출량의 적정 사용 여부
3. 표지 및 광고의 적정 사용 여부
4. 탄소성적표지 인증 무단사용 여부
5. 체계 인증기업의 내부검증 및 운영관리 적정 여부
6. 그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원장은 사후관리 심사 시 고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탄소성적표지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사후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취소 등의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원장은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 등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심의위원회)** ①기술원장은 제26조에 따라 인증취소 등의 여부를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4인 이상 7인 이하로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전문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 대상제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관련 전문가

3. 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할 본부장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후관리 심의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인증취소 등의 판정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사후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심의결과 인증취소로 결정된 경우에는 고시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기술원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장 홍보업무 및 전문성 제고 등

**제28조(제도홍보 및 지원)** ①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2.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등에 관한 자료집 발간 및 배포
  3.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4.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의 승인사항에 대한 홍보
  5. 탄소성적표지 홈페이지 운영
  6.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등 전시회 참가
  7. 그 밖의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등 탄소성적표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 ②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탄소성적표지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백화점 등 복합 판매 시설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함)
  2. 언론기관에서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각종 간행물 등에 탄소성적표지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환경보전시책의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탄소성적표지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9조(교육훈련 지원)** ①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기술원장은 인증심사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의 변경사항 및 신규 작성지침에 관한 교육
  2. 신규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사례에 관한 교육
  3. 국제환경규제 등 제품환경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

**제30조(특별협정 등 지원)** 기술원장은 외부기관 및 기업이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에 협조한 경우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교육 또는 인증심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장 전문위원 운영

**제31조(전문위원 위촉)**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작성지침 개정
  2. 인증지침 개정
  3. 탄소성적표지 사전심의
  4.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
  5. 탄소성적표지 사후관리 심의
  6. 그 밖의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전과정평가 및 환경경영 실무경험 5년 이상인 학계 및 연구소 관계자
  2.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및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기술원장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④기술원장은 전문위원의 수를 100인 내외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전문위원 해촉)** 기술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허위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별지 제21호서식 윤리규정준수서약을 위반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33조(수당 등 지급)** 기술원장은 전문위원과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문비, 심사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장 그 밖의 사무관리 절차

**제34조(처리기간)** 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승인일까지를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사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처리기간은 고시에 따라 90일로 한다.



**제35조(제안 및 신청 철회)** 기술원장은 신청자가 신청사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관계서류 및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의 심사비를 제외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기술원장은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당해연도 인증심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 및 기록관리)** 기술원장은 인증심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및 기록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장 보 칙

**제38조(비밀누설금지)** ①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종사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 업무상 얻은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인증심사원, 심의위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 윤리규정준수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성 확보)** ①기술원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에는 위원의 선정절차, 선정방법 및 위원회의 운영과정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위원회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1. 검증 또는 심의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면심의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기술원장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을 준용한다.

④제5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1호의2 기밀·청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자료열람)** 신청자 등으로부터 기록에 관한 조사, 제출 및 열람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세칙)** 기술원장은 이 업무규정의 시행 및 그 밖의 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2009.2.8.)

**제1조(시행일)** 이 업무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6.3.)

**제1조(시행일)** 이 업무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업무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업무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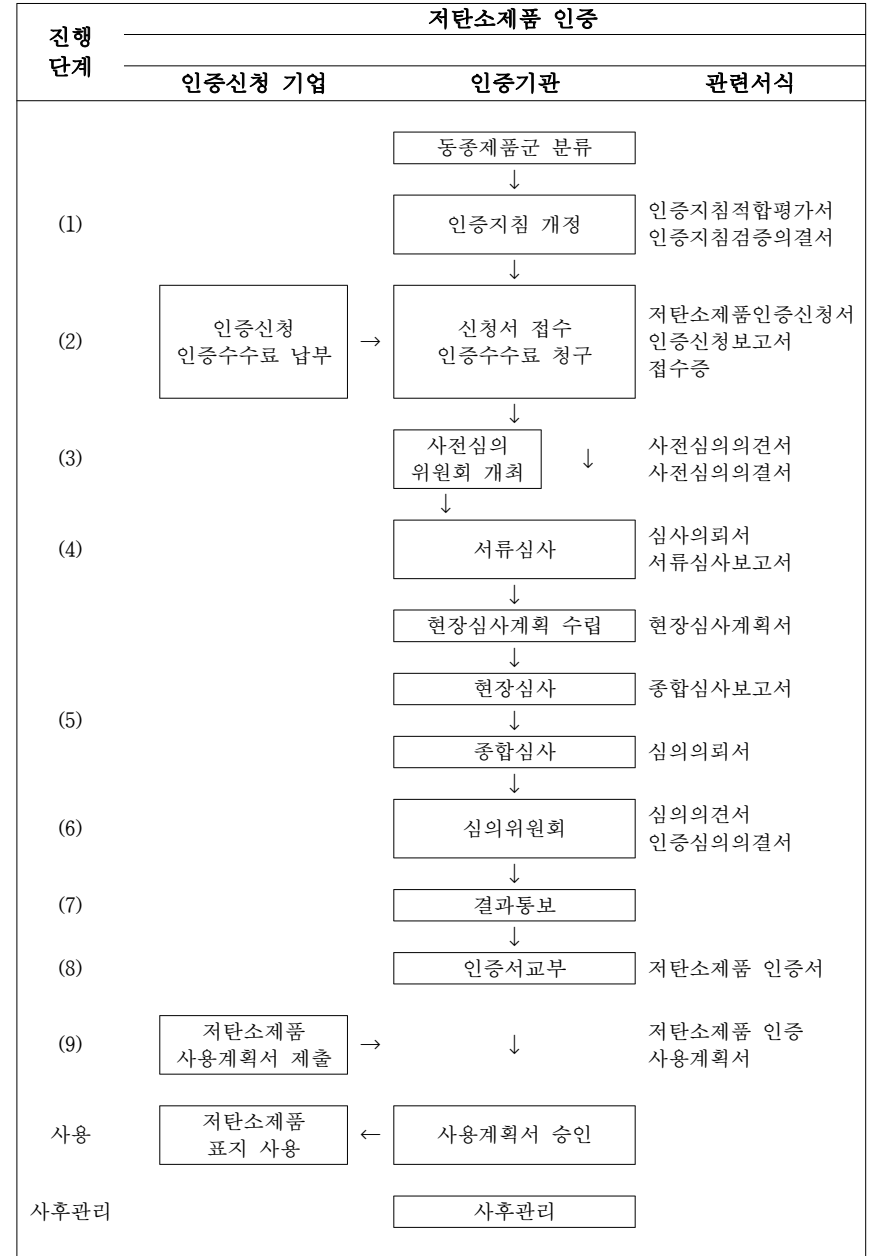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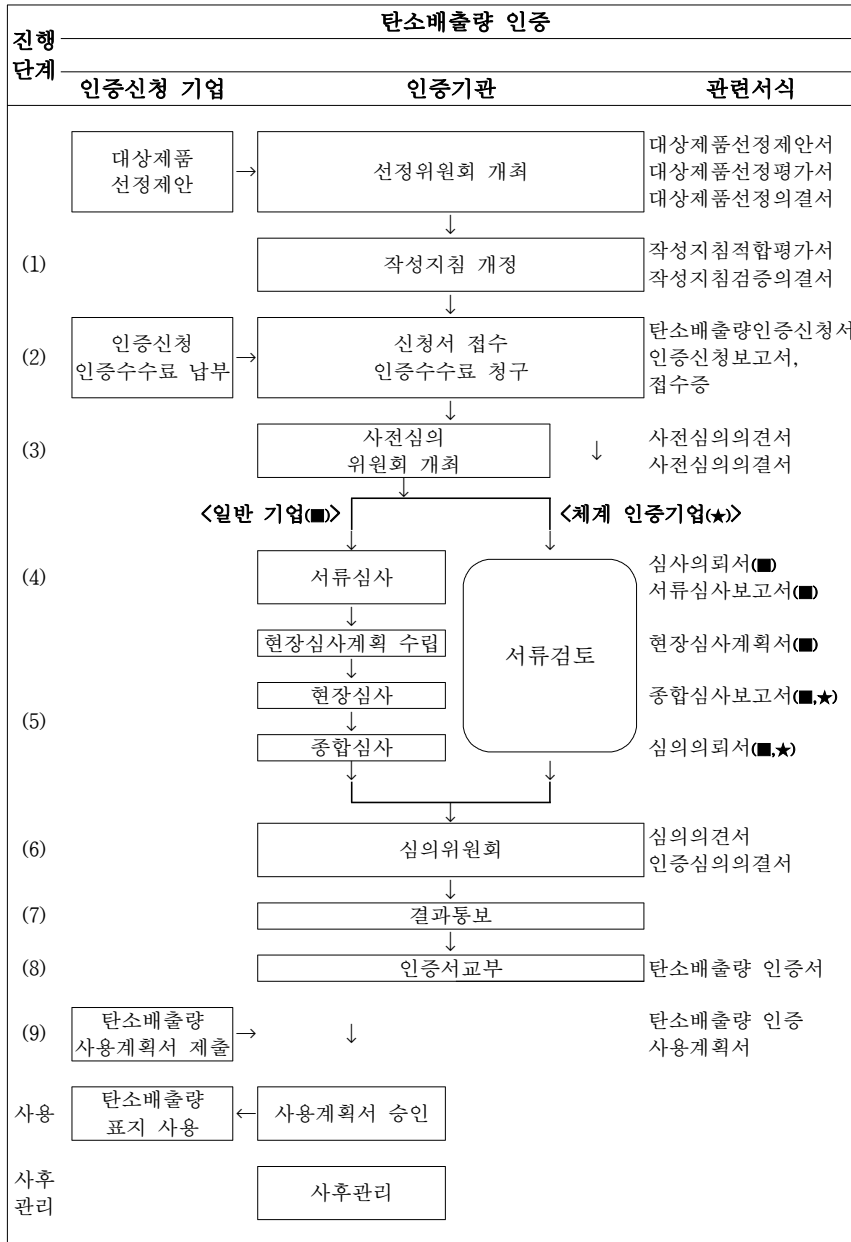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업무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업무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증업무 처리절차





대상제품 선정평가서					
제안제품					
제안자					
제품용도					
제안사유					
평가 항목	평가점수				
	5	4	3	2	1
1. 에너지 측정방법의 존재여부					
2. 현행 작성지침과의 독립성					
3. 시장과급효과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로 2점 이하가 있으면 선정되지 아니함					
□ 종합의견 :					
위 제안제품은 탄소성적표지 인증 대상제품으로 (□적합,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선정위원					(인)

대상제품 선정의결서							
<b>1. 선정위원회 상정 제안제품</b>							
구분	제안제품					제안자	
가							
나							
다							
라							
마							
<b>2. 최종 선정결과</b>							
구분	평가결과						
	A	B	C	D	E	F	최종
가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나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다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라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마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 제안제품의 선정 여부 : 3분의 2 이상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함							
□ 종합의견 :							
<b>이와 같이 탄소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결과를 의결합니다.</b>							
20    년    월    일							
					선정위원장	_____ (인)	
					선정위원	_____ (인)	
					선정위원	_____ (인)	
					선정위원	_____ (인)	
					선정위원	_____ (인)	

작성지침 적합평가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1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2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3
대상제품 (사용 시나리오의 경우)			
작업반원			
작성지침안 주요 내용			
평가 항목	적합	부적합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절성			
2. 현행 작성지침과의 일관성			
3. 탄소배출량의 비교가능성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방법 : 부적합이 있으면 선정되지 아니함			
□ 종합의견 :			
위 작성지침안은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으로 (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검증위원		(인)	


작성지침 검증의결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1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2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3			
대상제품 (사용 시나리오의 경우)						
작업반원						
작성지침안 주요 내용						
구분	검증위원별 평가 결과					
적합여부	A	B	C	D	E	F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작성지침안의 적합 여부 : 3분의 2 이상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함						
□ 종합의견 :						
이와 같이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검증위원회 결과를 (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인증지침 적합평가서			
평가대상 대상제품군 목록	※ 동종제품군 분류, 탄소배출량 및 탄소감축률은 별도로 제시		
평가 항목	적합	부적합	
1. 동종제품군 분류의 적절성			
2. 동종제품군별 기준단위의 적절성			
3. 동종제품군별 인증지침 값의 적합성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방법 :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제품군만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종합의견 :          			
상정된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안 중에서 적합 판정받은 것은 ( )건이고, 부적합 판정받은 것은 ( )건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검증위원			(인)

인증지침 검증의결서								
평가대상 대상제품군 목록	※ 동종제품군 분류, 탄소배출량 및 탄소감축률은 별도로 제시							
구분	검증위원별 평가 결과							
적합 여부	구분	A	B	C	D	E	F	
	적합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부적합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부적합 인증지침							
※ 인증지침안의 적합 여부 : 전원 적합 판정으로 결정함								
<input type="checkbox"/> 종합의견 :          								
이와 같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지침 검증위원회 결과를 ( )건은 적합, ( )건은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 이해관계자 의견서

이해관계자 정보	법인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전송	
		핸드폰	
	이메일		
주소			
이해관계자 의견	대상제품		
	현 인증지침에 대한 의견		
	인증지침 요청안		
	의견제시 근거		
<p>「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b>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b></p>			
<p>&lt;구비서류&gt; 1. 이해관계자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p>			



##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신청보고서

제품명 :

20 . . .

기업 로고

### I. 제품 개요

1. 회사정보	기업명																											
	주소	본사																										
		공장1																										
		공장2																										
		공장3	※ 해당 제품의 생산 공장이 복수인 경우 모두 기입																									
담당자	성명	○○○																										
	연락처	02-000-000 (cp : 000-000-0000) / 이메일 :																										
2. 제품정보	명칭																											
	분류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사용내구재 <input type="checkbox"/> 에너지비사용내구재 <input type="checkbox"/> 비내구재 <input type="checkbox"/> 생산재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주요기능																											
	보조기능																											
	제품특징																											
3. 공정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정명</th> <th>세부공정</th> <th>공정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제조전 단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제조 단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정명	세부공정	공정설명	제조전 단계										제조 단계									
	구분	공정명	세부공정	공정설명																								
	제조전 단계																											
제조 단계																												
4. 제품사진																												

### II. 프로젝트 개요

1. 계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단위</li> <li>○ 제품 총량 정보</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가</th> <th>단위</th> </tr> </thead> <tbody> <tr> <td>제품</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포장재</td> <td>최소포장</td> <td></td> </tr> <tr> <td>출하포장</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가	단위	제품			포장재	최소포장		출하포장		합계												
	구분	가	단위																						
제품																									
포장재	최소포장																								
	출하포장																								
합계																									
2. 시스템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과정단계</li> </ul> <p>(1) 제품 및 부품생산 단계</p> <p>(2) 제품사용 단계</p> <p>(3) 제품폐기 단계</p> <p>(4) 수송 과정</p>																								
3. 데이터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데이터 수집 범위 및 품질</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명칭</th> <th>수집지역</th> <th>수집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명칭	수집지역	수집기간																				
	구분	명칭	수집지역	수집기간																					



4.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제조전 단계</li> <li>○ 제품 제조 단계</li> </ul>
5. 가정 및 제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제조전 단계</li> <li>○ 제품 제조 단계</li> <li>○ 사용 단계</li> <li>○ 폐기 단계</li> </ul>

### Ⅲ. 데이터 수집 및 계산

#### 1. 제외기준 선정

##### 1.1. 원부자재

부품명	단위	수량	투입량	비율	누적질량 기여도(%)
소 계	kg				

##### 1.2. 최소포장재

부품명	단위	수량	투입량	비율	누적질량 기여도(%)
소 계					

2. 제품 제조전 단계

2.1. 원부자재 2.1.1. A부품(원료)명

구분	번호	투입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직접/간접	DB명	배출계수		
투입물	1											
	2											
	3											
	4											
	5											
Total												
구분	번호	산출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사용여부	DB명	배출계수		
산출물	1											
	2											
Total												

[양식해설]

- 양: 제품 기능단위를 기준으로 투입된 양과 산출된 양을 기입한다.
- 데이터품질: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측정치”, “계산치”, “추정치”로 구분한다.
- 근거자료: 데이터의 계산근거 자료로 기업이 관리하는 문서의 명칭과 연도 기입한다.
- LCI DB 사용 : 직접배출/간접배출/사용안함을 선택하여 표기한다.
- 계산근거: 1년 데이터를 제품단위당으로 환산한 계산과정 기록하며, 산출근거는 별도로 첨부한다.

2.1.2. B부품(원료)명...

구분	번호	투입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직접/간접	DB명	배출계수		
투입물	1											
	2											
Total												
구분	번호	산출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사용여부	DB명	배출계수		
산출물	1											
	2											
Total												

2.2. 최소포장재

2.2.1. A포장재명

- 2.1.1의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

2.2.2. B포장재명...

- 2.1.1의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

2.3. 출하포장재

구분	번호	투입물 명칭	단위	양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DB명	배출계수		
투입물	1									
	2									
	3									

#### 2.4. 원료 및 보조원료 수송 (제조전 단계 → 제조 단계 수송)

구분	원료명	기업명	단위 입고량 1) (ton/개)	입고율(%) 2)	수송거리(km) 3)	단위수송량 4) (ton·km/개)
공로수송						
	소 계					
	소 계					
해양수송						
합 계						

[양식해설]

- ‘단위 입고량 1)’은 제품 기능단위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양을 의미하며 ton 단위로 계산한다.
- ‘입고율(%) 2)’은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각 사업장의 입고량을 1)로 나눈 값으로 퍼센트(%)로 나눈다.
- ‘수송거리(km) 3)’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원료물질 생산기업으로부터 제품제조 사업장까지의 편도 최단거리를 의미한다.
- ‘단위수송량(ton·km) 4)’은 ‘입고율(%) 2)’을 100으로 나눈 값과 각사의 ‘수송거리 3)’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 ※ 해양수송시의 ‘수송거리(km)’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의 표준 거리표를 활용한다.

구분	원료명	단위수송량(ton·km)	LCI DB명	배출계수(kgCO2/ton·km)	배출량(kgCO2)
공로수송					
해양수송					
총 발생량(기능단위)					

[양식해설]

- 원부자재명에 따른 단위수송량과 배출계수를 곱하여 전체 원료 및 보조원료 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3. 제품 제조 단계

#### 3.1. 제품 생산

구분	번호	투입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직접/간접	DB명	배출계수		
투입물	1											
	2											
	3											
	4											
	5											
Total												
구분	번호	산출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사용여부	DB명	배출계수		
산출물	1											
	2											
Total												

[양식해설]

- 양: 제품 기능단위를 기준으로 투입된 양과 산출된 양을 기입한다.
- 데이터품질: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측정치”, “계산치”, “추정치”로 구분한다.
- 근거자료: 데이터의 계산근거 자료로 기업이 관리하는 문서의 명칭과 연도 기입한다.
- LCI DB 사용 : 직접배출/간접배출/사용안함을 선택하여 표기한다.
- 계산근거: 1년 데이터를 제품단위당으로 환산한 계산과정 기록하며, 산출근거는 별도로 첨부한다.

### 3.2. 제품 유통

구분	운송위치	권역별판매량① (ton)	단위판매량③ (ton/개)	수송거리④ (km)	단위수송량⑤ (ton·km/개)
공로수송	수도권(서울)				
	강원도(원주)				
	충청남도(대전)				
	충청북도(청주)				
	경상남도(대구)				
	경상북도(부산)				
	전라남도(광주)				
	전라북도(전주)				
	내륙-제주				
소계					
해양수송	제주도				
합 계					

[양식해설]

- ‘단위 판매량③’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ton 단위로 계산한다. [(권역별 판매량①) ÷ 총 판매량②] × 단위제품 무게(ton)
- ‘이동거리(km)④’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제시된 권역별 수송거리(km)를 적용한다.
- ‘단위수송량(ton·km)⑤’은 ‘단위판매량(ton)③’과 ‘이동거리④’를 곱하여 계산한다.
- ‘⑥’은 ‘단위수송량(ton·km)⑤’의 합을 의미하며 공로수송에 따른 제품유통의 결과이다.
- 제주도까지의 해양수송은 별도로 계산하고 ⑦에 기입합니다.
- ※ 제품의 전국 지역별 유통량과 수송거리를 고려하여 총 수송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위 수송량을 산정하여 국가 LCI DB 배출계수 적용

구분	단위수송량 (ton·km)	LCI DB명	배출계수 (kgCO <sub>2</sub> /ton·km)	배출량 (kg)
공로수송				
해양수송				
총 발생량(기능단위)				

[양식해설]

- 공로수송과 해양수송에 따른 단위수송량과 배출계수를 곱하여 전체 제품 유통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4. 제품사용 단계

- 2.1의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 ‘작성지침 3’에 따른 투입/산출물 데이터를 기입합니다. (에너지 사용, 교체품 및 소모품의 투입, 배출, 냉매 등)
- ‘작성지침 3’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 ‘작성지침 3’에 따른 교체품 및 소모품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5. 제품 폐기 단계

■ 일반제품 폐기 단계

- 2009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1차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2006)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따른 배출 비율을 따른다.
-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번호	물질명	단위	양				LCI DB 명	배출계수 (gCO2/g)	온실가스 배출량 (gCO2)
			재활용	종량제					
1			재활용						
			종량제						
2			재활용						
			종량제						

[양식해설]

-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기타 합성수지(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653),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476)
- 1)  $90g \times 0.653 \times 0.985 \times 0.0186gCO2/g = 1.08gCO2$

■ 에너지사용제품 폐기 단계

- 해당 제품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당 제품인 경우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하고 해당 재질별로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2006)”의 처리 비율에 따라 데이터 수집내역을 기입한다.
-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엑셀양식은 별도로 첨부함

5.1. 재활용의무율에 따른 배출량 산정

부품명	재질명	투입량 (kg)	재활용 의무율	대상 투입량	재활용			소각			매립			온실가스 배출량 (kg-CO2)
					비율(%)	LCI DB	배출계수	비율(%)	LCI DB	배출계수	비율(%)	LCI DB	배출계수	
합계														

5.2.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산정

부품명	재질명	투입량 (kg)	비회수 비율	대상 투입량	재활용			소각			매립			온실가스 배출량 (kg-CO2)
					비율(%)	LCI DB	배출계수	비율(%)	LCI DB	배출계수	비율(%)	LCI DB	배출계수	
Stand														
PCB Assembly														
합계														

#### IV.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 1.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여도 산정

구분	배출량(g)	기여도
제품 제조전 단계		
제품 제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합계		

##### 2.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제품제조전	제품제조	사용	폐기
	kg(g)CO2				

#### V.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온실가스 감축 가능 단계	
적용할 저탄소 기술	
기술도입에 따른 예상 감축률	


VI. 첨부자료

1. LCI 데이터베이스 목록

전과정단계	공정명	물질명	LCI 데이터베이스			
			명칭	연도	출처 및 지역	배출계수값
제품 제조 단계						
제품 제조전단계						
수송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2. 데이터 수집 근거자료

[별지 제4호의2서식]



저탄소제품  
CO<sub>2</sub>  
국가가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 제품입니다  
www.edp.or.kr

**탄소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신청보고서**

제품명 :

20 . .

기업 로고

I. 제품 개요																											
1. 회사정보	기업명																										
	주소	본사																									
		공장1																									
		공장2																									
	공장3	※해당 제품의 생산 공장이 복수인 경우 모두 기입																									
담당자	성명	○○○																									
	연락처	02-000-000 (cp : 000-000-0000) / 이메일 :																									
2. 제품정보	명칭																										
	분류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사용내구재 <input type="checkbox"/> 에너지비사용내구재 <input type="checkbox"/> 비내구재 <input type="checkbox"/> 생산재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주요기능																									
	보조기능																										
	제품특징																										
3. 공정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정명</th> <th>세부공정</th> <th>공정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제조전 단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제조 단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정명	세부공정	공정설명	제조전 단계							제조 단계												
	구분	공정명	세부공정	공정설명																							
	제조전 단계																										
	제조 단계																										
4. 제품사진																											

II. 프로젝트 개요																							
1. 계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단위</li> <li>○ 제품 종량 정보</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제품</th> <th>값</th> <th>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포장재</td> <td>최소포장</td> <td></td> <td></td> </tr> <tr> <td>출하포장</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제품	값	단위	포장재	최소포장			출하포장			합계								
구분	제품	값	단위																				
포장재	최소포장																						
	출하포장																						
합계																							
2. 시스템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과정단계</li> </ul>																						
	(1) 제품 및 부품생산 단계																						
	(2) 제품 사용 단계																						
	(3) 제품 폐기 단계																						
	(4) 수송 과정																						
3. 데이터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데이터 수집 범위 및 품질</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명칭</th> <th>수집지역</th> <th>수집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명칭	수집지역	수집기간																
	구분	명칭	수집지역	수집기간																			



4.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제조전 단계</li> <li>○ 제품 제조 단계</li> </ul>			
5. 가정 및 제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제조전 단계</li> <li>○ 제품 제조 단계</li> <li>○ 사용 단계</li> <li>○ 폐기 단계</li> </ul>			
<b>6. 온실가스 감축량</b>				
구분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 1)	감축활동 후 탄소배출량 2)	탄소배출량 단위	감축률(%) 3)
대상제품			kgCO2	
<b>7. 대상제품의 저탄소제품 인증지침</b>				
구분	기본 목표감축률(%) 4)	업종별 목표감축률(%) 5)	대상제품의 목표감축률(%) 6)	목표감축률 달성여부 7)
탄소감축률 기준				
구분	동종제품군 명칭 8)		동종제품군 탄소배출량 9)	탄소배출량 달성여부 10)
탄소배출량 기준				

8. 감축활동		
감축활동	전과정구분 11)	적용한 감축활동 및 설명 12)
1		
2		
3		
4		
5		

[양식해설]

-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 1)’은 감축활동 전 산정된 탄소배출량을 기입한다.
- ‘감축활동 후 탄소배출량 2)’은 감축활동 수행 후 산정된 탄소배출량을 기입한다.
- ‘감축률 3)’은 감축활동 후 탄소배출량과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의 차이를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로 기입한다.
- ‘기본 목표감축률 4)’은 제품별 감축기간에 따른 기본 감축률을 기입한다.
- ‘업종별 목표감축률 5)’은 목표관리제 해당업종의 업종 감축률, 미해당업종 또는 부재년도는 기본 목표감축률을 기입한다.
- ‘대상제품의 목표감축률 6)’은 기본 목표감축률과 업종별 목표감축률을 이용하여 산정된 값을 기입하세요.

(기본 목표감축률(%) \*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의 제조 단계 이외의 단계 배출량 기여도%) + (업종별 목표감축률(%) \*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의 제조 단계의 배출량 기여도%)

- ‘목표감축률 달성여부 7)’은 대상제품의 목표감축률 달성여부를 기입한다.(달성/미달성, 실제 감축률)
- ‘동종제품군 명칭 8)’은 대상제품이 속한 동종제품군을 기입한다.
- ‘동종제품군 탄소배출량 9)’는 대상제품이 속한 동종제품군의 탄소배출량을 기입한다.
- ‘탄소배출량 달성여부 10)’은 대상제품의 탄소배출량 달성여부를 기입한다. (달성/미달성, 실제 기능단위당 배출량)
- ‘전과정 구분 11)’은 해당하는 감축기술을 사용한 전과정단계를 기입한다. (제조전단계, 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중 해당하는 전과정단계 기입)
- ‘적용한 감축활동 및 설명 12)’은 감축활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기입한다.

### III. 데이터 수집 및 계산

#### 1. 제외기준 선정

##### 1.1. 원부자재

부품명	단위	수량	투입량	비율	누적질량 기여도(%)
소 계	kg				

##### 1.2. 최소포장재

부품명	단위	수량	투입량	비율	누적질량 기여도(%)
소 계					

- 51 -

#### 2. 제품 제조전 단계

##### 2.1. 원부자재 2.1.1. A부품(원료)명

구분	번호	투입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직접/간접	DB명	배출계수		
투입물	1											
	2											
	3											
	4											
	5											
Total												
구분	번호	산출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사용여부	DB명	배출계수		
산출물	1											
	2											
Total												

[양식해설]

- 양: 제품 기능단위를 기준으로 투입된 양과 산출된 양을 기입한다.
- 데이터품질: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측정치”, “계산치”, “추정치”로 구분한다.
- 근거자료: 데이터의 계산근거 자료로 기업이 관리하는 문서의 명칭과 연도 기입한다.
- LCI DB 사용: 직접배출/간접배출/사용안함을 선택하여 표기한다.
- 계산근거: 1년 데이터를 제품단위당으로 환산한 계산과정 기록하며, 산출근거는 별도로 첨부한다.

2.1.2. B부품(원료)명...

구분	번호	투입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직접/간접	DB명	배출계수		
투입물	1											
	2											
Total												
구분	번호	산출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사용여부	DB명	배출계수		
산출물	1											
	2											
Total												

2.2. 최소포장재

2.2.1. A포장재명

- 2.1.1의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

2.2.2. B포장재명...

- 2.1.1의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

2.3. 출하포장재

구분	번호	투입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DB명	배출계수		
투입물	1										
	2										
	3										

2.4. 원료 및 보조원료 수송 (제조전 단계 → 제조 단계 수송)

구분	원료명	기업명	단위 입고량 1) (ton/개)	입고율(%) 2)	수송거리(km) 3)	단위수송량 4) (ton·km/개)
공로수송						
	소 계					
	소 계					
해양수송						
합 계						

[양식해설]

- ‘단위 입고량 1)’은 제품 기능단위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양을 의미하며 ton 단위로 계산한다.
- ‘입고율(%) 2)’은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각 사업장의 입고량을 1)로 나눈 값으로 퍼센트(%)로 나눈다.
- ‘수송거리(km) 3)’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원료물질 생산기업으로부터 제품제조 사업장까지의 편도 최단거리를 의미한다.
- ‘단위수송량(ton·km) 4)’은 ‘입고율(%) 2)’을 100으로 나눈 값과 각사의 ‘수송거리 3)’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 ※ 해양수송시의 ‘수송거리(km)’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의 표준 거리표를 활용한다.

구분	원료명	단위수송량(ton·km)	LCI DB명	배출계수(kgCO2/ton·km)	배출량(kgCO2)
공로수송					
해양수송					
총 발생량(기능단위)					

[양식해설]

- 원부자재명에 따른 단위수송량과 배출계수를 곱하여 전체 원료 및 보조원료 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3. 제품 제조 단계

#### 3.1. 제품 생산

구분	번호	투입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직접/간접	DB명	배출계수		
투입물	1											
	2											
	3											
	4											
	5											
Total												
구분	번호	산출물 명칭	단위	양	누적질량 기여도	데이터 품질	근거자료	LCI DB 사용(kgCO2/kg)			계산근거	CO2발생량 (kgCO2)
								사용여부	DB명	배출계수		
산출물	1											
	2											
Total												

[양식해설]

- 양: 제품 기능단위를 기준으로 투입된 양과 산출된 양을 기입한다.
- 데이터품질: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측정치”, “계산치”, “추정치”로 구분한다.
- 근거자료: 데이터의 계산근거 자료로 기업이 관리하는 문서의 명칭과 연도 기입한다.
- LCI DB 사용 : 직접배출/간접배출/사용안함을 선택하여 표기한다.
- 계산근거: 1년 데이터를 제품단위당으로 환산한 계산과정 기록하며, 산출근거는 별도로 첨부한다.

#### 3.2. 제품 유통

구분	운송위치	권역별판매량① (ton)	단위 판매량③ (ton/개)	수송거리④ (km)	단위 수송량⑤ (ton·km/개)
공로수송	수도권(서울)				
	강원도(원주)				
	충청남도(대전)				
	충청북도(청주)				
	경상남도(대구)				
	경상북도(부산)				
	전라남도(광주)				
	전라북도(전주)				
	내륙-제주				
소계					
해양수송	제주도				
합 계					

[양식해설]

- ‘단위 판매량③’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ton 단위로 계산한다. [(권역별 판매량1)÷총 판매량②]×단위제품 무게(ton)
- ‘이동거리(km)④’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제시된 권역별 수송거리(km)를 적용한다.
- ‘단위수송량(ton·km)⑤’은 ‘단위판매량(ton)③’과 ‘이동거리④’를 곱하여 계산한다.
- ‘⑥’은 ‘단위수송량(ton·km)⑤’의 합을 의미하며 공로수송에 따른 제품유통의 결과이다.
- 제주도까지의 해양수송은 별도로 계산하고 ⑦에 기입하세요.
- ※ 제품의 전국 지역별 유통량과 수송거리를 고려하여 총 수송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위 수송량을 산정하여 국가 LCI DB 배출계수 적용

구분	단위수송량 (ton+km)	LCI DB명	배출계수 (kgCO2/ton+km)	배출량 (kgCO2)
공로수송				
해양수송				
총 발생량(기능단위)				

[양식해설]

- 공로수송과 해양수송에 따른 단위수송량과 배출계수를 곱하여 전체 제품 유통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4. 제품 사용 단계

- 2.1의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 ‘작성지침 3’에 따른 투입/산출물 데이터를 기입합니다. (에너지 사용, 교체품 및 소모품의 투입, 배출, 냉매 등)
- ‘작성지침 3’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 ‘작성지침 3’에 따른 교체품 및 소모품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 5. 제품 폐기 단계

##### ■ 일반제품 폐기 단계

- 2009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1차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2006)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따른 배출 비율을 따른다.
-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번호	물질명	단위	양				LCI DB 사용유무	배출계수 (gCO2/ g)	온실가스 배출량 (gCO2)	
1				재활용						
				종량제						
2				재활용						
				종량제						

[양식해설]

-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기타 합성수지(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653),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476)  
- 1)  $90g \times 0.653 \times 0.985 \times 0.0186gCO2/g = 1.08gCO2$

**■ 에너지사용제품 폐기 단계**

- 해당 제품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당 제품인 경우 “200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하고 해당 재질별로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2006)”의 처리 비율에 따라 데이터 수집내역을 기입한다.
-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엑셀양식은 별도로 첨부함

**5.1. 재활용의무율에 따른 배출량 산정**

부품명	재질명	투입량 (kg)	재활용 의무율	대상 투입량	재활용			소각			매립			온실가스 배출량 (kgCO2)	
					비율(%)	LCI	DB	배출계수	비율(%)	LCI	DB	배출계수	비율(%)		LCI
합계															

**5.2.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산정**

부품명	재질명	투입량 (kg)	비회수 비율	대상 투입량	재활용			소각			매립			온실가스 배출량 (kgCO2)	
					비율(%)	LCI	DB	배출계수	비율(%)	LCI	DB	배출계수	비율(%)		LCI
합계															

**IV.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1.1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여도 산정**

구분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 kg(g)CO2	감축활동 후 탄소배출량 kg(g)CO2	감축활동 후 기여도%
제품 제조전 단계			
제품 제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합계			

### 1.2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활동 전)	단위	제품제조전	제품제조	사용	폐기
	kg(g)CO <sub>2</sub>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활동 후)	단위	제품제조전	제품제조	사용	폐기
	kg(g)CO <sub>2</sub>				

### 1.3 감축활동 전과 후 비교표

구분	NO.	투입물/산출물 명칭	기능단위 투입량/산출량				배출계수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감축 전	감축 후	감축량	단위	배출계수	단위	
제조전 단계									
제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합 계									

### V.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

감축기술 1	
전과정 구분	
적용한 저탄소 기술	※ 정의한 전과정 구분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적용한 감축활동을 정의하고, 설명을 작성한다. ※ 감축활동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 감축활동 전과 후의 탄소배출량 저감 정도와 효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근거자료	

[양식해설]

- V.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에 대한 데이터 작성시트는 'II. 프로젝트 개요-8.감축활동' 에 제시된 감축활동 순으로 작성한다.
- 전과정 구분: 감축활동을 수행한 전과정단계를 기입한다.  
(제조전단계, 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중 해당하는 전과정단계 기입)
- 적용한 저탄소 기술: 감축활동 및 감축 활동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입한다.
- 근거자료: 저탄소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첨부 문서명을 기입하고, 근거문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VI. 첨부자료

1. LCI 데이터베이스 목록

전과정단계	공정명	번호	물질명	LCI 데이터베이스		
				명칭	연도	출처 및 지역
제품 제조 전 단계						
제품 제조 단계						
수송						
사용 단계						
폐기 단계						

2. 데이터 수집 근거자료

[별지 제4호의3서식]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보고서**  
제품군 :

20 . .

기업 로고



I. 일반 사항																																			
1. 회사정보	기업명																																		
	본사 주소																																		
	인증 담당자	성명	○○○																																
		연락처	02-000-000 (cp : 000-000-0000) / 이메일 :																																
2. 공장정보	제조공장명																																		
	제조공장 주소		※해당 제품의 제조공장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인증신청보고서를 작성																																
	공장 담당자	성명	○○○																																
		연락처	02-000-000 (cp : 000-000-0000) / 이메일 :																																
	주요 생산제품 (생산비율)	① aaaaa(50%)      ② bbbbb(30%)      ③ ccccc(20%) ※생산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																																	
3. 제품군 정보	제품군명																																		
	분류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사용내구재 <input type="checkbox"/> 에너지비사용내구재 <input type="checkbox"/> 비내구재 <input type="checkbox"/> 생산재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해당 상품(브랜드)명																																		
	주요기능																																		
	보조기능																																		
	제품특징																																		
4. 공정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정명</th> <th>세부공정</th> <th>공정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제조전 단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제조 단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사용 단계</td> <td></td> <td></td> <td></td> </tr> <tr> <td>폐기 단계</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정명	세부공정	공정설명	제조전 단계										제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구분	공정명	세부공정	공정설명																															
	제조전 단계																																		
	제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II. 제품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체계			
항목		내용(관련 문서 또는 관련 부속 절차서)	
1. 조직	법적 책임		
	조직구조 및 최고경영자		
	공평성 관리		
2. 인적 자원	인원의 적격성		
	검증활동에 관련된 인원		
	외부검증원 및 기술전문가의 활용		
	인원에 관한 기록		
3.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탄소배출량 산정 절차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심사 신청	
		문서화	
		모니터링 및 측정	
		데이터 검토	

II. 제품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체계

항목		내용(관련 문서 또는 관련 부속 절차서)
3.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검증 심사 절차	일반 요구사항
		검증심사 계획 수립 및 인증신청
		검증심사단 구성
		검증심사 수행
		부적합, 시정 및 시정조치
		심사보고서
	사후 관리 활동	사후관리 심사
		갱신 심사
		특별 심사
		인증의 정지, 취소 또는 축소

II. 제품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체계

항목		내용(관련 문서 또는 관련 부속 절차서)
4. 운영 관리	내부 심사	절차수립 및 시행
		시정조치
		예방조치
	문서관리	
	기록관리	
	정보 관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인증서 및 도안의 사용
		정보변경에 대한 보고
	경영검토	

II. 제품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체계

점검사항		내용	
내부 심사	절차수립 및 시행		
	시정조치		
	예방조치		
4. 운영 관리	문서관리		
	기록관리		
	정보 관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인증서 및 도안의 사용	
	정보변경에 대한 보고		
	경영검토		

[별지 제5호서식]

## 접수증 (보관용)

1. 접수번호 :  
2. 대상제품(또는 제품군) :  
3. 신청상품(브랜드)명 : (해당 시)  
4. 신청기업명 :

위와 같이 귀사의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보고서를 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 (인)

## 접수증 (발급용)

1. 접수번호 :  
2. 대상제품(또는 제품군) :  
3. 신청상품(브랜드)명 : (해당 시)  
4. 신청기업명 :

위와 같이 귀사의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보고서를 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 (인)

사전심의의견서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사전심의위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	제품명	상품명/모델번호	
지침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input type="checkbox"/> 인증지침 <input type="checkbox"/> 체계 인증지침		사전심의 일정
<b>2. 사전심의 내역</b>			
항목	심의 사항		판정
대상제품 적합평가	- 작성지침 적용범위외의 적합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인증에 따른 대국민 인식과 관련된 파급 효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환경성 정보의 왜곡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능단위와 표시방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사용시나리오 개발 필요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동일제품 및 파생제품 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적합여부 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체계 인증 대상제품군 여부 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사전심의의결서	
<b>1. 일반사항</b>	
심의안건	세부 내용
<b>2. 최종 사전심의결과</b>	
심의결과	심의안건
적합	
부적합	
※ 사전심의안건에 대한 여부 : 전원 적합 판정으로 결정함	
<input type="checkbox"/> 종합의견 :	
<b>탄소성적표지 사전심의위원회 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b>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심의위원	_____ (인)

1.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

심사의뢰서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본사			
		공장1			
		공장2			
신청제품	제품명			상품명/모델번호	
작성지침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1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 2				
<b>2. 심사단 구성</b>					
심사단장	성명				
	연락처				
	주소				
심사원	성명				
	연락처				
	주소				
<b>3. 심사의뢰 내역</b>					
○ 심사단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상기 제품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 심사단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가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심사단은 심사과정에서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 및 별도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양식에 따라 기술원장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 인증심사 결과는 심사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 주십시오.					
<b>4. 첨부 서류</b>					
<input type="checkbox"/> (탄소배출량 / 저탄소제품) 인증신청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탄소배출량 계산 근거자료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심사를 의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 (인)</div>					

2.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심사의뢰서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본사	
		공장1	
		공장2	
신청제품군			
<b>2. 심사단 구성</b>			
심사단장	성명		
	연락처		
	주소		
심사원	성명		
	연락처		
	주소		
심사원	성명		
	연락처		
	주소		
<b>3. 심사의뢰 내역</b>			
<input type="checkbox"/> 심사단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상기 제품군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심사단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신청자가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인증심사 결과는 심사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 주십시오.			
<b>4. 첨부 서류</b>			
<input type="checkbox"/>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및 관련 근거자료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심사를 의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 (인)</div>			

1.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

<b>서류심사보고서</b>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심사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	제품명	상품명/모델번호		
작성지침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1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2		서류심사 일정	
<b>2. 서류심사 결과</b>				
심사항목		시정 요구사항		
기능단위				
시스템경계				
데이터 수집/품질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외부			
데이터 계산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외부			
할당				
가정 및 제한사항				
탄소배출량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저탄소제품 인증지침(필요시)				
기타(필요시)				
<b>3. 사후조치 안내</b>				
○ 심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 )년 ( )월 ( )일까지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조치 결과의 제출이 늦어지면 현장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단장 : (인)		

2.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b>서류심사보고서</b>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심사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군			
<b>2. 서류심사 결과</b>			
심사항목		시정 요구사항	
제품군 선정			
조직	법적 책임		
	공평성 관리		
인적 자원	인원의 적격성		
	검증활동에 관련된 인원		
	외부 검증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활용		
	인원에 대한 기록		
산정 및 검증	탄소배출량 산정 절차		
	검증심사 절차		
운영 관리	내부심사		
	문서관리		
	기록관리		
	정보관리		
	경영검토		
기타(필요 시)			
<b>3. 사후조치 안내</b>			
○ 심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 )년 ( )월 ( )일까지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조치 결과의 제출이 늦어지면 현장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단장 : (인)	

1.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

접수번호					현장심사계획서					
신청기업		주소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신청 제품	제품명				
	전화					상품명/ 모델번호				
	전송					작성지침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1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2		
	전자우편									
심사구분	탄소배출량 인증심사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갱신				
	저탄소제품 인증심사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갱신				
현장심사 일정	공장 1	20 . . . . ~ 20 . . . . ( 일 )								
	공장 2	20 . . . . ~ 20 . . . . ( 일 )								
현장심사 시간계획	시간	심사내용			비고					
특기사항	1. 현장의 심사준비 상황에 따라 심사시간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항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에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데이터 작성자의 참석을 바랍니다. 2) 사업장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를 사전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투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밀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심사단장									
	심사원									
귀사에서 신청한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심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단장 : (인)										

2.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접수번호		현장심사계획서			
신청기업		주소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신청 제품군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심사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심사		<input type="checkbox"/> 갱신심사		
현장심사 일정	공장 1	20 . . . . ~ 20 . . . . ( 일 )			
	공장 2	20 . . . . ~ 20 . . . . ( 일 )			
현장심사 시간계획	시간	심사내용		비고	
특기사항	1. 현장의 심사준비 상황에 따라 심사시간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항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에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데이터 작성자의 참석을 바랍니다. 2) 사업장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를 사전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투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밀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심사단장				
	심사원				
위와 같이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심사 계획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단장 : (인)					

1.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

종합심사보고서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심사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	제품명		상품명/모델번호	
작성지침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1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2		현장심사 일정	
<b>2. 현장심사 내역</b>				
구 분	심사 결과			
서류심사 결과 시정조치 확인				
신청제품 및 생산공정 확인				
데이터 관련 근거자료 확인				
데이터계산 타당성 확인				
<b>3. 부적합 내역</b>				
부적합 사항				
<b>4. 심사 결과</b>				
<input type="checkbox"/> 인증 추천 <input type="checkbox"/> 시정조치 확인 후 인증추천 <input type="checkbox"/> 인증추천 불가				
<b>5. 사후조치 안내</b>				
○ 1차 시정조치 완료기한은 ( )년 ( )월 ( )일까지입니다.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 )년 ( )월 ( )일까지 부적합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종합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단장 :	(인)
			기업대표 :	(인)

2.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종합심사보고서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심사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군			
<b>2. 현장심사 내역</b>			
구 분	심사 결과		
서류심사 결과 시정조치 확인			
신청제품군 및 생산공정 확인			
데이터 관련 근거자료 확인			
운영관리 현황 확인			
<b>3. 부적합 내역</b>			
항목	부적합 사항		
<b>4. 심사 결과</b>			
<input type="checkbox"/> 인증 추천 <input type="checkbox"/> 시정조치 확인 후 인증추천 <input type="checkbox"/> 인증추천 불가			
<b>4. 사후조치 안내</b>			
○ 1차 시정조치 완료기한은 ( )년 ( )월 ( )일까지입니다.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 )년 ( )월 ( )일까지 부적합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심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위한 종합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단장 :	(인)
		기업대표 :	(인)



1.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

심의의뢰서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심사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	제품명	상품명/모델번호		
작성지침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1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2		심사 일정	
<b>2. 시정조치 내역</b>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사항		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b>3. 심사 내용</b>				
항목	심사 내용			판정
기능단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시스템경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데이터수집/품질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데이터계산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할당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가정 및 제한사항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탄소배출량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저탄소제품 인증지침(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기타(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b>4. 심사 결과</b>				
위 제품의 탄소배출량은 (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b>5. 구비 서류</b>				
<input type="radio"/> 서류심사 보고서 <input type="radio"/> 종합심사 보고서 <input type="radio"/>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신청보고서(최종 수정본)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심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단장 :				(인)

2.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심의의뢰서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심사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군				
심사일정	서류심사			현장심사
<b>2. 시정조치 내역</b>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사항		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b>3. 심사 내용</b>				
항목	심사 내용			판정
제품군 선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조직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인적자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산정 및 검증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운영관리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b>4. 심사 결과</b>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은 (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b>5. 구비 서류</b>				
<input type="radio"/> 서류심사 보고서 <input type="radio"/> 종합심사 보고서 <input type="radio"/>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보고서(최종 수정본)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심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단장 :				(인)

1.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

<b>심의의견서</b>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심사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	제품명		상품명/모델번호	
작성지침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1 <input type="checkbox"/> 작성지침2		심의 일자	
<b>2. 심의 내용</b>				
항목	심의 의견			판정
기능단위				① ② ③ ④
시스템경계				① ② ③ ④
데이터수집/품질				① ② ③ ④
데이터계산				① ② ③ ④
할당				① ② ③ ④
가정 및 제한사항				① ② ③ ④
탄소배출량				① ② ③ ④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① ② ③ ④
저탄소제품 인증지침(필요시)				① ② ③ ④
기타(필요시)				① ② ③ ④
※ 항목별 심의결과에 따라 체크해 주세요. (①적합, ②부적합, ③조건부 승인, ④승인 보류) ※ ②, ③, ④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 한 개의 항목이라도 ①이 아니면 심의위원회 결과가 “승인” 될 수 없습니다.				
<b>3. 심의 결과</b>				
위 제품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 결과, (탄소배출량 인증/저탄소제품인증) 이 (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부결,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승인, <input type="checkbox"/> 승인 보류)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심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2.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b>심의의견서</b>			
<b>1. 일반사항</b>			
접수번호		심사원	
신청기업	상호명		
	주소		
신청제품군			
<b>2. 심의 내용</b>			
항목	심의 내용		판정
제품군 선정			① ② ③ ④
조직			① ② ③ ④
인적자원			① ② ③ ④
산정 및 검증			① ② ③ ④
운영관리			① ② ③ ④
기타(필요 시)			① ② ③ ④
※ 항목별로 심의결과가 적합하면 ①, 부적합하면 ②, 조건부 인정이면 ③, 인정 보류이면 ④에 체크해 주세요. ※ ②, ③, ④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 한개의 항목이라도 ①이 아니면 심의결과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b>3. 심의 결과</b>			
위 기업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 결과, 제품군 검증체계가 (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부결,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승인, <input type="checkbox"/> 승인 보류)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상과 같이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심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별지 제14호의2서식]

동일제품·제조원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전화 : ) (전송 : )		
구 분	기 인증제품	신청제품	
대상제품			
상 호			
제품명			
제조공장			
인증번호			
인증기간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의 동일제품·제조원 인정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인증기업		신청기업 (동일제품·제조원)	
상호 :		상호 :	
대표자성명 :	(인)	대표자성명 :	(인)
<b>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b>			
<구비서류> 1. 동일제품·제조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인증서 사본			

[별지 제15호서식]

(파생제품/변경/갱신)인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전화 : ) (전송 : )			
	제조공장 (전화 : ) (전송 : )			
구 분	대상제품	제품명	용 도	
최초 인증제품				
(파생제품/변경/갱신) 인증 신청제품				
인증 종류	<input type="checkbox"/> 탄소배출량 <input type="checkbox"/> 저탄소제품			
	<input type="checkbox"/> 파생제품 인증 <input type="checkbox"/> 변경인증 <input type="checkbox"/> 갱신인증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파생/변경/갱신) 인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b>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b>				
<구비서류> 1. (파생/변경/갱신)인증 신청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 2. 제1호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 윤리규정준수서약서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행한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또한 내·외부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배격한다.
3.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4.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기업/개인과 본인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다.
5. 인증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고객의 기밀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6. 인증관련 제반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

- 일 자 :

- 성 명 : (인)

### 기밀·청렴 준수 서약서

성 명 : \_\_\_\_\_

회 의 명 : \_\_\_\_\_

상기 본인은 탄소성적표지 관련 심의(인증, 선정, 사전, 검증, 사후관리 등)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인(기업) 및 신청제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심의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 취득한 모든 영업 또는 기술적인 정보 및 심사 중에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서 법률이나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기밀준수와 관련하여 인증기업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일 자 :

- 성 명 : (인)

제 호

### 위 축 장

성 명 :

소 속 :

위 축 기 간 :

귀하를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전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 (인)

### CERTIFICATE OF KOREA CARBON FOOTPRINT LABEL

We hereby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clare the carbon footprint(carbon e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under the 'Operating Rules on Carbon Footprint' and are granted the right to use the Korea Carbon Footprint Label.

Name of Brand :

Licensee :

The Amount of CO<sub>2</sub> Equivalent :

Certificate No.

Issued :

Valid until :

Jil-Dong HONG, President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CERTIFICATE OF KOREA CARBON FOOTPRINT LABEL

No.

We hereby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clare the carbon footprint(low carbon product)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under the ‘Operating Rules on Carbon Footprint’ and are granted the right to use the Korea Carbon Footprint Label.

Name of Brand :

Licensee :

The Amount of CO<sub>2</sub> Equivalent :

Certificate No.

Issued :

Valid until :

Jil-Dong HONG, President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